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3,492,416	29,504,772
일반회계	867,897,394	26,036,922
특별회계	115,595,022	3,467,851
공기업특별회계	95,937,545	2,878,1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266,721	1,028,00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234,459	1,267,03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436,365	583,091
기타특별회계	19,657,477	589,724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4,311	1,029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99,145	23,97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38,345	115,150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4,071,429	122,143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96,275	104,888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778,955	83,369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4,639,017	139,171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987,0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